

제 1 절 주민생활지원과

1.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 등록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장애, 신장, 심장장애,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 등 15가지의 장애가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며, 우리 구의 2006년 등록 장애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뇌병 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15,234	8,823	1,551	1,442	782	1,354	112	404	394	74	298
1급	1,343	328	234	54	215	383	56	39	13	3	18
2급	2,333	648	52	335	313	379	28	207	311	11	49
3급	2,730	1,470	80	249	254	339	28	158	0	59	93
4급	2,207	1,651	85	286	0	111	0	0	5	0	69
5급	2,982	2,374	112	266	0	95	0	0	65	1	69
6급	3,639	2,352	988	252	0	47	0	0	0	0	0

2)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는 거주지 동사무소(장애인담당)에 사진 2매(3×4cm)와 장애인 등록 신청서(동사무소비치)를 작성, 함께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신청인이 치료를 받던 진료기관 등)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 의뢰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정부지원(일부), 일반장애인 : 본인부담)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서 장애진단서(장애등급 표기)를 동사무소로 보내며,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서를 확인한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교부하며 소요기간은 약 1개월이다.

나.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가) 장애수당

수급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 차상위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장애아동 수당

수급중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 차상위중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 차상위경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
(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라)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만원(연 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 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 2회)

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들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교부품목은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을 교부하며, 2005년에 금년 교부품목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해 시행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등록된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지원

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장애인용 자동차에 표지를 부착하게 하여 주차편의제공,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 가스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2003. 11월부터 보행상 장애유무, 본인유무에 따라 차등발급)

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장애인 동등생활 가정운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부랑인 보호 및 행여 사망자 처리

1) 처리절차

가)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나 부랑인을 보호하여 입소 대상자 특성에 따라 부랑인시설에 입소 조치한다.

나) 행여 사망자 처리

행여 사망자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확인하며, 연고자가 없을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청으로 처리 의뢰하게 된다. 처리의뢰 접수 시, 구청장은 장의 대행업자인 “신중양장의운송사”에 화장을 지시하여 화장 후 인천공동묘지에 안치토록 한다.

2. 생활보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추진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 10. 1부터 시행되었다.

2) 개 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는

▶ 첫째,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둘째, 급여종류가 확대되었고 급여수준이 증가되었다.

- 주거급여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 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 셋째,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였다.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였다(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넷째,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 여건을 조성하였다.

3)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마다 204,218원씩 증가(예 : 7인 1,813,848원)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006. 12. 31 기준]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442	10,300	5,028	9,695	414	605	

※ 특례수급자 :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타 법령 지원자(북한이탈주민 등)

5)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라 함은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적용범위가 다음과 같아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1) 적용 대상자

- 노인, 중증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구청장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가능)

(2)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 (1) 적용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 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2) 급여내용 : 일반수급자와 동일

다) 의료급여의 특례

(1) 적용 대상자

- 소득 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나,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2)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지원
 - 1종 : 107개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 2종 : 107개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라) 교육급여 특례

(1) 적용 대상자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지급

마) 자활급여 특례

(1) 적용 대상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중지
 -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적용

바) 기타 타 법령 지원 수급자

- 적용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 감염자),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등

6) 급여의 실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교육급여, (4)해산급여, (5)장제급여가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교육특례·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액(원/월)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74,730원씩 증가
- 급여방법 : 매월 20일 기준 현금지급 (계좌입금)

나) 주거급여

- 급여대상자 : 의료특례 · 교육특례 · 자활특례자 및 시설수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계좌입금)
- 급여내용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월)	33천 원	42천 원	55천 원

- ※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 급여방법 : 매월 20일 기준 현금 지급

다) 교육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중 중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한 자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연1회), 학용품비(연2회), 부교재비(연1회)
- 급여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라) 해산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 급여내용 : 출산여성에게 50만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시 25만원 추가, 쌍둥이 75만원, 세쌍둥이 100만원)
- 급여방법 :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

마) 장제급여

- 급여대상자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급여내용 : 의료급여 1종은 구당 50만원, 의료급여 2종은 구당 40만원 지급
- 급여방법 :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나. 자활급여

1) 목 적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2) 의의 : 조건부 생계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3) 근로능력자(조건부수급자) 판정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 규정)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신부, 공익근무요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4) 조건부수급자 유형

취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비취업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 제공 등이 필요한 자

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신청

1) 목 적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국민 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내 용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신청자격
 - 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주민으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 융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만 35세 이상의 1년 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선정제외 대상
 - 차량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승용차 소유자(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제외)
 -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 (단, 배기량 1,000cc미만차량 소유자 제외)
 - 세대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 등 포함) 2대이상 소유자 (단, 차량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제외)
 - 부동산 소유자(부동산 중 종중묘지 등 환급성이 극히 낮은 토지 제외)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 대상상 대상 부분이 주거용이 아닐 경우나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는 경우
 -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등의 소유로 사회 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1) 목 적 :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2) 내 용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지녀야 한다.
 - 남동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국가유공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모자가정, 부자가정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선정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미만인자
 - 생업용, 보철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마. 저소득층 생업자금 신청

1) 목 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자금 융자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2) 내 용

- 융자금액 : 신용융자 무보증 1,200만원 이하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 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신청자격
 - 본 인(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자 1인)
- 담보융자 : 담보범위 내

바. 의료급여사업

1) 의의

의료급여사업은 1977. 12. 31. 법률 제3076호로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되면서 국가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

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종류

가)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주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행려환자, 18세미만 입양아동, 차상위 수급권자(희귀성난치성질환자)

나)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의 120%에 해당하는 자

3) 대상자 책정기준

가) 1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3개월이상 장기질환자
- 국가유공자 :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9등급 이하로 분류된 세대(단, 8등급으로 분류된 세대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세대단위 의료급여 실시)
-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소득, 재산조사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요청한 세대
- 행려자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세대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 이 재 민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개인급여)
- 차상위 1종 : 희귀난치질환자(개인급여)

나) 2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차상위 2종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의 아동

4)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세대/인원)

종 별	총 계 (A+B)	1 종								2 종 (B)	차상위	
		소 계 (A)	수급자	국 가 유공자	무 형 문화재	5·18 관련자	북한이 탈주민	의사자 유 족	시 설 수급자		1 종	2 종
계	6,554/ 12,333	3,393/ 5,392	3,426/ 5,289	258/ 552	1/2	6/23	165/ 226	1/3	50	1,749/ 4,779	115/ 116	310/ 359

5)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지원기준(진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

(가) 1종(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 2007. 7. 1. 시행)

- 외래진료시 1차 : 1,000원, 2차 : 1,500원, 3차 : 2,000원, 약국 : 500원
- 제외대상 : 18세미만아동,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나) 2종 : 국가부담 85%, 본인부담 15%

6) 진료절차

(가) 지참물 :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나) 절 차 : 1차, 2차, 3차 3단계로 하며 진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희망 진료기관에 제출한다.

7) 의료급여 대불 안내

(가) 대 상 자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나) 기 준 :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다) 신청절차 : 진료기관(병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

(라) 상환방법 : 대불금을 지급한 3개월이 경과한 후 분할 상환하며 무이자로 함.

- 10만원 미만 : 3회
- 10~30만원 미만 : 8회
- 30만원 이상 : 12회

8)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가)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범 위 : 매월 30일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할 경우

○ 1종 -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30일 미만이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보상)

(다) 신청절차

○ 지급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청구) → 구청장 지급

○ 지급대상내역 통보 : 공단 → 구청장 → 수급권자

(라) 지급제외대상

○ 등록장애인

○ 보건소주관 희귀난치질환사업, 소아암사업 대상으로 전액지원 받는 경우

○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9)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6급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지원(단, 의료급여 적용분에 한함)

(나) 지원내용

○ 1차병원처방전이 없을 경우엔 750원, 처방전이 있으면 500원, 약국은 250원

○ 2, 3차 진료기관 진료비는 의료급여 적용분(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의 전액

3. 통합조사 및 복지서비스지원 연계사업

가. 통합조사업무

1) 사업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2)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외 8종)

○ 복지 대상자 보장 변경(중지)및 결정(급여통지)

○ 제외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의뢰

3) 통합조사 실무 회의를 통한 사례 연구

- 사례연구(수시), 실무회의(월2회) 및 『사례집』 발간
- 사례분야별 연구를 통한 전문성 확보(분야별 담당자 지정)
- 직원교육 및 회의(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및 담당자) : 4회, 96명

나.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위원 재구성

구 분	위원수	임 기	기 능	비고
대표협의체	10~20명	2년	• 사회복지관련 중요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실무협의체	“	2년	• 사회복지관련 중요사항을 실무협의하며 대표협의체 업무수행 지원	-
실무분과	8개 분과 구성	실무재직기간 중	• 사회복지관련 대상 인구를 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연계제공으로 실무협의체 업무수행 지원	-

- 남동구 민간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중심의 분과 위원 재구성
- 민간사회복지기관 서비스 연계 및 업무 공유 효과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사업 홍보 및 길거리 캠페인 전개

- 장 소 : 롯데백화점 광장 (추후 변경가능)
- 행사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사업 홍보 및 일반주민 대상 「남동구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 배포
- 예 산 : 2,500천원

2)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 기금 현황

구 분	목표액	기금원액	2006년 조성액	2007년도 조성계획	가용재원 (보통예금 예치)
계	3,250,000	3,120,000	340,000	130,000	141,649
사회복지기금	1,250,000	1,150,000	30,000	100,000	57,590
기초생활보장기금	2,000,000	1,970,000	310,000	30,000	84,059

-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지 및 안내문 배부

- 사회복지서비스(8대 서비스 포함) 제공 및 연계정보 공지 : 분기별 1회
- 내 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문 제작·배포 : 2007. 7월(예정)
- 배포대상 : 복지시설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2,000부)
- 예 산 : 2,000천원

4) 긴급복지지원 사업

가) 긴급지원 체계마련

- 민간자원 : 의사, 교사, 복지위원, 통·반장 등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 복지콜센터(129) : 365일 24시간 상담반 운영, 관할 시, 군, 구에 연계
- 남동구청 현장방문조사반 팀 구성으로 야간 및 공휴일 지원 대비
- 예 산 : 491,010천원 (국 80 : 시 10 : 구 10)

나) 추진내용

- 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4인가족 1,170천원)
- 의료비 : 최대 300만원 이내
- 해산·장제비 : 50만원 및 주거지원(임시거소)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이내

4.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

1) 목 적

가)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

‘98년 5월부터 정부의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개선하여 실업대책의 중추적인 한 부문으로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공공근로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여건과 현안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총 사업비 7억 3백만원으로 159개 사업장에 1일 평균 80여명을 투입하여 총 사업예비의 98%에 달하는 6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인원 1만 8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2) 공공근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계	분권교부세	시 비	구 비	2005이월	비 고
703,469	268,173	216,971	200,532	17,793	

3) 2006년 주요추진실적

가)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 정리사업

남동구 전 지역에서 수거되어 남촌동 625-64번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품의 분리선별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1일 평균 6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연인원 1,368명)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와 1,994여톤의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 정리, EPR 대상품 84톤 선별·압축으로 분리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유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다.

나)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 사업

유홍상가 밀집지역인 구월동 로데오 미관광장 4개소와 보행자 전용도로 13개소에 공공근로 4명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불량 보도블럭 정비, 유홍업소 홍보 전단지 수거, 무단 쓰레기 처리로 로데오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근접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였으며, 주민들이 쾌적한 쉼터로 찾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정리 현장 】



【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 현장 】

4) 2007년도 추진계획

실업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은 이후 다양한 실업대책사업 및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지면서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동절기 실업률 상승,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07년에도 6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5) 향후발전방향 및 전망

지속적인 공공근로 사업실시로 단기간 실직자를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업장을 개발 마련하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취업정보센터 운영

1) 목 적

가) 다양한 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과 인력이 필요한 구인업체를 연결하여 맞춤형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동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를 통한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고 구인업체 및 구직자에게 2~3개월간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해 줌으로써 연중 구직등록대비 30%내외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2006년 주요추진실적

가) 구인·구직 접수 및 취업현황

구인접수		구직접수			취업알선			취업현황
기업체수	인원	계	남	여	계	남	여	
344	1,034	2,947	1,400	1,547	7,982	4,276	3,707	545명

나) 운영사항

- 취업알선(상담)상담 창구 운영 : 전문직업상담사 2명
- 고용안정정보망(취업포털사이트 work-net)활용
- 홍보강화 : 지역반상회보, 홍보리플렛 제작 등

3) 2007년도 추진계획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확하고 빠른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4) 향후발전방향 및 전망

보다 세분화된 일자리 알선으로 내실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1) 목 적

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참여시켜 취업기회를 제공

인력이 필요한 구인업체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당일 면접을 통한 빠른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정기적인 행사를 연 2회 추진하고 있다.

2) 2006년 주요추진사항

가) 행사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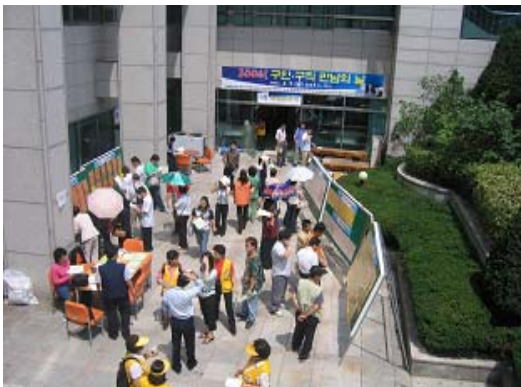
개최시기	참여업체수 (직·간접업체수)	참여인원수	당일면접인원	취업인수	비고
2006. 6월	93	600여명	283명	38명	
2006. 9월	115	700여명	406명	52명	

나) 다양한 부대행사

- 소자본 창업·자금상담(소상공인 지원센터 협조)
- 무료증명사진촬영(홍익직업전문학교)
- 직업적성검사, 자활상담, 법률상담 등

3) 2007년도 추진계획

연 2회 실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취업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내실 있는 부대행사를 실시하여 창업 및 자활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계층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4) 향후발전방향 및 전망

다양한 구인업체 참여를 유도하여 파트타임, 상용직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난 해소에 기여

라. 고용촉진훈련 실시

1) 목 적

가)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 계층에게 취업이 용이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훈련과정은 변경되며, 보일러취급관리, 사무자동화, 개인용 PC수리, 한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창업이나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은 3~6개월로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훈련생에게는 교통수당 등이 지급된다.

2) 2006년 주요추진실적

가) 훈련 실적

위 탁		수 료	중도포기	조기취업	취 업	자격취득	비고
훈련기관	훈련생						
4기관	76명	54명	13명	9명	32명	21명	

나) 사업비 : 131,346천원(국비 105,077천원 시비 26,269천원)

3) 향후발전방향 및 전망

유휴 노동인력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의 길을 열어줌.